

앞면창유리의 보호구역(제105조제1항제3호관련)

1. 보호구역은 다음 각목의 면으로 둘러싸인 부분으로 한다.
 - 가. 창유리 바깥면
 - 나. 창유리 바깥면의 각 지점에서 수직으로 76밀리미터 바깥쪽에 있는 점의 궤적이다. 창유리 바깥면의 윗변과 옆변 및 보호구역하한선의 각 지점에서 창유리 바깥면과 45도의 각을 이루는 면의 궤적
2. 제 1 호에서 보호구역하한선이라 함은 지름 165밀리미터, 무게 6.8킬로그램의 구가 창유리 안쪽면과 계기판넬 표면에 동시에 접하는 당해 창유리의 점들의 궤적을 그린 후 가장 바깥쪽의 양쪽 접촉점에서 창유리의 가장자리까지 수평으로 궤적을 연장할 때에 연장된 궤적과 평행한 12.7밀리미터 아래쪽 선을 말한다.

